



강릉원주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2. 24.] [강릉원주대학교학교규정 제2109호, 2022. 2. 24., 일부개정.]

강릉원주대학교, 033-640-20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2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전담부서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학생처에 둔다.

② 센터장은 학생처장이 겸직한다.

③ 센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센터의 행정업무는 학생복지과에서 지원한다.<개정 2022. 2. 24.>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에 정하는 편의제공
2.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
5. 그 밖에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재정 및 예산) 센터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5조(관련부서의 협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장애학생 지원

제6조(신고) 장애학생은 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재학 중 장애정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정보 제공) ① 센터는 신고 된 정보를 관리한다.

②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부서 및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수, 강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제8조(우선 수강신청) 장애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별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장학금) 장애학생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자재 확보 및 지원) ① 센터는 장애학생이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를 장애학생에게 지원하고, 사용법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제11조(학생생활관 지원) 장애학생에게는 생활관 우선선발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학생생활관 규정에 정한다.

제12조(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센터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간담회) 센터는 장애학생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학기별 1회 이상 장애학생과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14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22. 2. 24.>

② 당연직 위원은 교학부총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도서관장, 정보화본부장, 학생부처장, 학생복지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22. 2. 24.>

③ 임명직 위원은 장애학생,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복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개정 2022. 2. 4.>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주요 계획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3.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4.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사항
5.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1.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02109호, 2022. 2. 24.>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